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판 결

사 건 2025드단100237 이흔 등

원 고 김수연 (930707-2178413)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57, 102동 602호(안양동, 안양역 한양  
수자인 리버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담당변호사 이정도)

피 고 이수진 (910225-2177827)

인천 서구 가정로 387, 127동 1601호(신현동, 루월이편한세상하늘  
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우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28.

### 주 문

- 피고는 권준상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6.부터 2025. 11.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권준상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당사자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준상과 2021. 12. 24.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권준상에게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3년 12월경부터 권준상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특히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권준상과의 관계를 인스타그램에 보란 듯이 게시하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권준상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sup>1)</sup> 결국 피고는 권준상과 함께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에 2023년 12월경 권준상이 손님으로 방문하여 친해지게 된 후, 권준상이 자신을 이혼한 '돌싱남'이라고 소개하여 피고는 권준상과의 만남을 이어

1) 원고는 당초 권준상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혼 등을 청구하였는데, 원고와 권준상 사이의 소송은 '2025. 4. 1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국되었다.

나가게 되었으며, 2024년 3월경부터 비로소 권준상과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다. 그런데 권준상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일삼았고, 이에 권준상은 피고에 대한 상해 · 폭행 · 협박 등 혐의로 2024년 12월경 구속되었으며, 형사재판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형을 선고받게 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2. 18. 선고 2024고단2021, 2025고단83(병합) 판결]. 한편, 권준상과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2023년 2월경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는바, 권준상과 피고의 관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권준상의 기망으로 인해 권준상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권준상과 교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

## 2. 판 단

가. 피고는 "권준상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권준상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3년 12월경부터 권준상과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였고, 이후 배우자인 원고가 권준상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음을 인식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권준상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권준상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원고와 권준상의 혼인관계는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권준상은 2022년 2월경부터 이미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상태에

서 욕설, 협박은 물론 폭행·상해까지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23년 12월경 권준상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나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권준상의 말을 믿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 그러나 권준상의 지속적인 폭력적 언행과 이혼 요구로 인해 결국 2024년 3월경 권준상과 사이에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2023년 12월경 이후 원고, 권준상 및 피고가 서로에게 보인 모습, 원고가 2024년 6월경 피고의 SNS 게시물을 통해 권준상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된 후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경위 등을 살펴보면, 비록 권준상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파탄의 중대한 원인 또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권준상과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참작하도록 한다).

다. 한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참조),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모든 원인 중 제3자의 부정행

위가 직접 영향을 미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라.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권준상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및 그 정도, 권준상과 피고는 원고가 그들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정행위를 SNS 서비스를 통하여 과시하기도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배우자인 원고가 느꼈을 좌절과 배신감 및 분노의 크기, 부정행위가 원고 및 자녀의 일상생활 및 장래 계획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등을 참작해 되, 앞서 본 바와 같이 권준상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본 소송 진행 중 "권준상이 원고에게 안양만안경찰서에 접수된 특수상해 등 사건(2건)에 대한 위자료(부정행위 및 이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것이 아님)로 5,0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와 권준상 사이에 확정됨으로써 혼인파탄에 대한 권준상의 유책사유 중 일부에 관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권준상이 피고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무관한 사정이어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 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2025. 3. 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2025.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된 이유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익      전자서명완료

열람용

# 정본입니다.

2025. 11. 28.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법원주사 한진섭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